

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
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69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30.

발 의 자 : 정현미, 한근수, 이정애,
원주영, 한송연

1. 제안 이유

최근 경직된 공직 문화, 업무 부담,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공직의 인력 부족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을 규정
(안 제5조~제6조)
- 라.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관련법령 :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

다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연차 공무원”이란 남양주시 본청,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.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.

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

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
2.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지원사항)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
2.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
3.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
4.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」 제6조
(적성 검사, 교육, 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추진 중인 직원 교육 및 복리후생 사업 중 저연차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내용을 보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

※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및 지원사항

- 공개채용시험 인적성검사(6,000천원)
-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기본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(80,000천원)
-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(74,000천원)

■ 개정안 주요내용

-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 규정
 - 실태조사 :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,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
 - 지원사항 : 적성검사, 교육, 상담, 복지제도 강화 등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인사과장 이성주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~카. (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☑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

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 12. 11.>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2. 11.>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 12. 11.>

4. 삭제 <2011. 5. 23.>

☑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) ① 생략

② 제1항에서 “재직기간”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, 연월일수(年月日數)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(이하 “공무상 부상 등”이라 한다)으로 인한 휴직